

소 장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202-8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서초동, 삼성화재(주)) (채권담당자 이재만)
대표이사 홍원학
(전화: 070-7111-6486)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구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5,50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05.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 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 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163호7179 (벤츠 cls)호 차량(이하 `원고차량1`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도로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손상된 원고차량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2. 사고 개요

가. 사고 일자: 2023.05.16. 00:20경

나. 사고 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금화지하차도 터널진입 전

다. 사고 경위: 위 사고 장소에서 원고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포토홀에 빠지면서 원고차량이 손상된 사고입니다.

3. 원고의 보험금지급과 구상 범위

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과 구상권 대위취득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5,508,5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원고는 원고차량 소유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구상 범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포토홀에 빠지면서 원고차량이 손상된 사고이며,

이 사건 사고는 국가배상법 제 5호에서 말하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그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구조, 본래의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고의 포트홀은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건 포트홀에 대하여 보다 빠르게 보수를 하였거나 이 건 포트홀의 존재를 공지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사고 발생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1)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는 원고차량은 도로의 노면에 발생하는 파손된 노면까지 확인하면서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는 없는 점,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

시 원고차량은 정상 직진 중이었던 점, 3) 사고 발생시 야간대로 상당히 어두운 구간에서 원고차량 운전자가 파손된 노면을 발견하고 피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4) 이 사건 파손된 노면을 보면 상당기간 동안 마모가 진행되어 발생한 모습으로,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과실 100%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차량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5,50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3.05.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
| 2. 갑 제2호증 | 보험금 지급 현황 |
| 3. 갑 제3호증 | 보험금 지급 결의서 |
| 4. 갑 제4호증 | 사고발생약도 |
| 5. 갑 제5호증 | 사고현장 사진 |
| 6. 갑 제6호증의 1 | 원고차량 사진 |
| 7. 갑 제6호증의 2 | 원고차량 사진 |
| 8. 갑 제7호증의 1 | 사고확인서(원고차량운전자) |
| 9. 갑 제7호증의 2 | 사고확인서(원고차량운전자) |
| 10. 갑 제7호증의 3 | 사고확인서(원고차량운전자) |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원고)

2023.09.04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원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열람용